

#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 -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중심으로 -

서 고 은·고 은 희\*

<차례> \_\_\_\_\_

- |                    |                                  |
|--------------------|----------------------------------|
| I. 서 론             | Ⅲ. 우리나라에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br>가능성 |
| Ⅱ.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 | Ⅳ. 결 론                           |
- 

주제어 : 보험수익자, 개입권, 보험금청구권,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파산관재인, 압류, 파산, 보험계약자 변경, 보험자에 대한 통지

<국문초록>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필연적인 존재이자 보험금청구권의 실질적 귀속권자에 해당하는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보험계약의 직접적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후 유족보호를 주요 기능으로 함에 따라 보험계약관계자의 친족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 이에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행사를 제외한 보험수익자 지위에 대한 변동가능성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제한행사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행위로부터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 보호제도로써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란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보험수익자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어 두 당사자의 이익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에 의한다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 보호제도로써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변호사.

- 논문접수일(2019.06.13), 심사개시일(2019.06.13), 게재확정일(2019.06.27)

현재 이 제도는 독일과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바탕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 서론

보험수익자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행사에 의해 결정 및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보험수익자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필연적인 존재로서, 보험계약체결의 직접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및 보험자와 더불어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제한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간의 관계변화 등에 의해서도 변동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변동가능성은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호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필수적 권리인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위변동사유로부터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험수익자의 지위변동사유 중에서도 특히,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제한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쉽게 예상 및 대응하기 어려운 지위변동사유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부터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보험수익자의 지위보호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이익보호와 보험수익자 지위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 보호제도로써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는 독일과 일본이 있다. 이 중 독일의 경우 보험계약법(VVG) 제170조에서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2008년 제정한 보험법 제60조에서

보험수익자 개입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중에서도 근래에 단독 보험법을 제정하여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법리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로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

### 1. 보험수익자 개입권의 의의 및 취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과 같은 제3자가 생명보험계약을 해제<sup>1)</sup>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일단 해제된 후에는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설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많이 증액되어 실제로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보험계약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sup>2)</sup>

이에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보험법은 제60조<sup>3)</sup>에서 계약당사자 이

- 
- 1) 일본보험법 제59조에서는 생명보험계약의 해제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보험법상 '해제'는 우리 상법 제4편 보험계약법상의 '해지'와 그 효력이 같다. 다만, 일본보험법이 '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하 일본의 입법례에서는 '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2) 工藤香織, "介入権制度の實務運用について - 保険商品ごとの特性に着目して -", 「生命保険論集」第173号,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2010, 201頁.
  - 3) 保険法 第六十條 (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 1 差押債權者, 破産管財人その他の死亡保險契約(第六十三條に規定する保險料積立金があるものに限る. 次項及び次條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当事者以外の者で当該死亡保險契約の解除を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次項及び第六十二條において「解除權者」という。)がする当該解除は, 保險者がその通知を受けた時から一箇月を経過した日に, その効力を生ずる. 2 保險金受取人(前項に規定する通知の時において, 保險契約者である者を除き, 保險契約者若しくは被保險者の親族又は被保險者である者に限る. 次項及び次條において「介入權者」という。)が, 保險契約者の同意を得て, 前項の期間が経過するまでの間に,

외의 자(보험계약자의 압류채권자나 파산관재인 등)에 의한 보험계약해제의 효력 발생시기를 보험자가 통지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하고, 해당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친족인 보험수익자가 일정한 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보험계약해제의 효력발생을 부정하여 보험계약을 존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이다.<sup>4)</sup>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권리보호와 보험수익자의 지위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제도이다.<sup>5)</sup> 그리고 보험수익자 개입권에 관한 일본보험법 규정은 보험계약해제의 효력발생시나 개입권의 집행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sup>6)</sup>

当該通知の日に当該死亡保険契約の解除の効力が生じたとすれば保険者が解除権者に對して支拂うべき金額を解除権者に對して支拂い、かつ、保険者に對してその旨の通知をしたときは、同項に規定する解除は、その効力を生じない。3 第一項に規定する解除の意思表示が差押えの手續又は保険契約者の破産手續、再生手續若しくは更生手續においてされたものである場合において、介入権者が前項の規定による支拂及びその旨の通知をしたときは、当該差押えの手續、破産手續、再生手續又は更生手續との關係においては、保険者が当該解除により支拂うべき金銭の支拂をしたものとみなす(일본보험법 제60조(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 의한 해제 등의 효력 등) 제1항 - 압류채권자, 파산관재인 기타 사망보험계약제63조에 규정하는 보험료적립금이 있는 것에 한한다. 동조 제2항 및 다음 조 제1항에서도 동일하다.)의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해당 사망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동조 제2항 및 제62조에서는 「해제권자」라고 한다.)가 하는 해제는 보험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 - 보험수익자(전항에 규정한 통지 시에, 보험계약자인 자를 제외하고,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피보험자인 자에 한한다. 동조 제3항 및 제61조에서는 「개입권자」라고 한다.)가 전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해제통지 시점에 해당 사망보험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보험자가 해제권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해제권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또한 보험자에 대하여 그 취지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해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항 -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압류절차 또는 보험계약자의 파산절차, 회생절차나 갱생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 개입권자가 전항에 따른 지급 및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압류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갱생절차와의 관계에서는 보험자가 해당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甘利公人/福田弥夫, 「ポイントレクチャー-保險法」, 有斐閣, 2011, 242頁; 岡田豊基, 「現代保險法」(第2版), 中央經濟社, 2017, 367-368쪽; 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解説保險法」, 弘文堂, 2009, 175-176頁;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説(生命保險・傷害疾病正額保險)」, 有斐閣, 2010, 612-613頁; 遠山優治, “いわゆる「保險金受取人の介入權」導入にあたっての問題点”, 「生命保險論集」第156号,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 2006, 98-99頁; 遠山優治, “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介入權について”, 「生命保險論集」第165号, 生命保險文化センター, 2008, 172頁.

5) 김선정,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81집, 한국보험학회, 2008, 116쪽.

6) 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앞의 책, 179頁.

## 2. 보험수익자 개입권의 대상 및 행사주체

### (1)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사망보험계약으로 보험료적립금이 있는 보험계약에 한정된다(일본보험법 제60조 제1항). 생존보험계약이나 보험료적립금이 없는 보험계약은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생존보험계약의 경우 일정한 시점에 있어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어서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의 생활보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적립금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약반환금(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이 보통인데, 이에 따라 보험계약해제에 의한 해약반환금을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나 파산재단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약반환금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해약반환금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된다.<sup>7)</sup>

그리고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이어야 한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파산하여 보험계약이 압류된다고 하여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및 가족의 재산적 위험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들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sup>8)</sup>

한편,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사망보험계약과 생존보험계약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생사혼합보험계약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생존보험계약에는 개입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순수한 사망보험계약이 아닌 생사혼합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개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① 생사혼합보험계약에 대한 해제의 효력발생을 정지하지 않은 한 사망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입권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는 점, ② 생사혼합보험계약의 사망보험계약과 생존보험계약은 불가분의 것으로, 각각 독립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③ 생사혼합보험계약을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발생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

7) 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616-618頁; 潘阿憲, 「保險法概說」(第2版), 中央經濟社, 2018, 290-291頁; 萩本修編著, 「一問一答保險法」, 商事法務, 2010, 202頁.

8) 遠山優治, “いわゆる「保險金受取人の介入權」導入にあたっての問題点”, 앞의 논문, 104頁.

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일본보험법 제 62조<sup>9)</sup>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생사혼합보험계약이 사망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계약 전체가 개입권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sup>10)</sup>

## (2) 개입권의 행사주체

일본보험법상 개입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보험수익자일 것,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피보험자일 것, ③ 보험수익자가 아닐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일본보험법 제60조 제2항). 이와 같은 개입권자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개입권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개입권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 자체에 대하여 개입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sup>11)</sup>

### 1) 보험수익자일 것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입권자는 보험수익자에 한정된다. 이처럼 개입권자를 보험수익자에 한정하는 이유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해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9) 保險法 第六十二條(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 1 第六十條第一項に規定する通知の時から同項に規定する解除の効力が生じ、又は同條第二項の規定により当該解除の効力が生じないこととなるまでの間に保險事故が發生したことにより保險者が保險給付を行うべきときは、当該保險者は、当該保險給付を行うべき額の限度で、解除權者に對し、同項に規定する金額を支拂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保險金受取人に對しては、当該保險給付を行うべき額から当該解除權者に支拂った金額を控除した殘額について保險給付を行えば足りる。2 前條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保險者の解除權者に對する支拂について準用する(일본보험법 제62조(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 의한 해제 등의 효력 등) 제1항 -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지 시부터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될 때까지의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자가 보험금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제권자에 대하여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금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해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2항 - 전조의 규정은 전항에 따른 보험자의 해제권자에 대한 지급에 대하여 준용한다.

10) 潘阿憲, 앞의 책, 292頁; 遠山優治, “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介入權について”, 앞의 논문, 188-189頁; 李鳴, “第三者のためにする生命保險契約本質論”, 慶應義塾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277-278頁.

11) 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626頁.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입권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이다.<sup>12)</sup> 여기서 말하는 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해제를 통지한 시점의 보험수익자를 말한다.<sup>13)</sup>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해제통지 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를 개입권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변경된 보험수익자는 개입권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그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개입권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sup>14)</sup>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피보험자일 것

개입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수익자임에 더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친족이거나 피보험자 자신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친족인 보험수익자에게 개입권을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존속시켜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개입권제도의 취지임에 따라, 보험수익자 중 생활보장을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개입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일본민법 제725조에 따른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배우자, ③ 3촌 이내의 인척이다. 또한 사실혼관계자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친족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시점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도 개입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보험계약의 존속을 도모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자이기 때문이다.<sup>15)</sup>

12) 위의 책, 623頁; 山下友信, 「保險法」(第3版補訂版), 有斐閣, 2015, 325頁; 李鳴, 앞의 논문, 262頁; 工藤香織, 앞의 논문, 203頁.

13) 山下友信/米山高生, 위의 책, 624頁; 遠山優治, “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介入權)について”, 앞의 논문, 175頁.

14) 潘阿憲, 앞의 책, 292頁.

15) 위의 책, 292頁; 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624頁; 李鳴, 앞의 논문, 263頁.

### 3) 보험계약자가 아닐 것

보험계약자 본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가입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일본법제심의회 보험법부회의 논의가 있었다. 일본법제심의회 보험법부회는 ① 보험계약자 본인이 가입권자가 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가 매우 어렵다는 점, ② 보험계약자 스스로가 채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결과로써 해약반환금의 압류나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등을 받은 것이므로 가입권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 가입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왜곡될 염려가 있다는 점, ③ 보험계약자 이외의 보험수익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친족인 경우가 많아 보험계약자는 친족인 보험수익자에게 가입권의 행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자신이 직접 가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가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sup>16)</sup>

## 3. 보험수익자 가입권의 행사요건

### (1)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을 것

가입권자가 가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이자 보험료지급의무(일본보험법 제2조 제3호),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일본보험법 제43조 제1항), 보험계약해제권(일본보험법 제54조) 등과 같은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에 따라 보험계약의 존속에 대해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다. 따라서 가입권에 의한 보험계약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가입권 행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은 가입권의 원래 취지와도 어긋난다.<sup>17)</sup>

한편, 가입권자는 가입권 행사 후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새로운 제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가입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얻는 때에 가입권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

16) 山下友信/米山高生, 위의 책, 624頁; 위의 논문, 262-263頁.

17) 위의 책, 625頁.

즉,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동의도 함께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8)</sup>

개입권 행사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가 요건이 아닌 것은 보험수익자 개입권 제도가 계약관계에 대한 특별한 변경이 발생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 개입권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보험수익자에 한정하는 점, 개입권의 행사는 직접적으로 피보험자에 의한 해제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sup>19)</sup>

## (2)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해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을 지급할 것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게서 보험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개입권자는 해제통지시점에 보험계약의 해제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입권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해 보험계약의 해제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해약반환금 상당액과 배당금, 미경과보험료, 선납보험료정산액, 급부미지급금액 등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료자동대체대부나 보험계약대출의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sup>20)</sup>

개입권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보험계약의 해제통지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력발생시점을 지연시킨데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동시에 개입권자가 보험계약을 존속시키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sup>21)</sup>

개입권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

18) 潘阿憲, 앞의 책, 293頁.

19) 遠山優治, “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介入權)について”, 앞의 논문, 177頁.

20) 岡野谷知廣, “保險契約者の破産と介入權”, 『(新しい) 保險法の理論と實務』, 2008, 235頁.

21) 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625頁; 潘阿憲, 앞의 책, 293頁; 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앞의 책, 178頁; 위의 논문, 235頁.

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해 제한이 이루어진 금액의 범위에 한정된다.<sup>22)</sup> 따라서 가입권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자로부터 지급금액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혼합된 생사혼합보험계약의 경우 가입권자는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수익자인데, 생사혼합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계약만을 존속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망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가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존보험계약을 포함한 생사혼합보험계약 자체의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을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sup>23)</sup>

### (3) 보험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할 것

보험자는 가입권 행사를 위해 가입권자가 실제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보험계약의 해제효력이 발생한 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다시 금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자의 이중지급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권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24)</sup>

통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보험법상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상 보험자는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권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다음과 같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① 보험계약 존재통지서, ②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의 사본, ③ 가입권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친족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본 등, 가입권자가 피보험자 자신인 경우 제외됨), ④ 가입권자의 인감증명서, ⑤ 보험계약자의 인감증명서, ⑥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날인이 있는 경우 그 인감증명서가 있다.<sup>25)</sup>

22) 李鳴, 앞의 논문, 264頁.

23) 潘阿憲, 앞의 책, 293-294頁.

24) 위의 책, 294頁; 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626頁.

25) 李鳴, 앞의 논문, 265頁.

#### 4. 보험수익자 개입권의 행사기간

개입권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개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일본보험법 제60조 제2항). 개입권의 행사기간을 ‘보험계약의 해제통지 후 1개월’로 하는 것은 일본법제심의회 보험법부회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해제통지를 수령,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개입권자가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을 조달 및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한 지급, 해당 사실의 보험자에 대한 통지라는 일련의 행위를 하기 위한 기간으로 1개월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보험법에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한 경우 이를 개입권자에게 알리는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험실무에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개입권자가 보험계약해제의 효력발생일 전까지 신속히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보험자는 통상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제통지를 수령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보험계약자를 통하여 보험수익자에게 계약해제청구서를 수령한 사실에 대한 안내장을 송부하는 방식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안내장에는 계약해제청구서의 접수일, 접수일 기준 해약반환금, 계약해제의 효력발생일 등의 내용과 개입권제도의 설명, 개입권 행사가능기간 및 그 행사방법이 기재되어 있다.<sup>26)</sup>

#### 5. 보험수익자 개입권의 행사효과

개입권자가 요건을 갖추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일본보험법 제60조 제2항).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한다.<sup>27)</sup>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일본보험법이 규정하는 개입권 행사의 효과는 보험계약의 해제효력이 발생하기 전 해제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험계약의 해제효력이 발생한 후 해제된

26) 위의 논문, 265-266頁.

27) 山下友信, 「保險法」(第3版補訂版), 앞의 책, 326頁; 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627頁; 潘阿憲, 앞의 책, 294頁; 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앞의 책, 178頁; 遠山優治, “契約當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介入權について”, 앞의 논문, 178頁.

보험계약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sup>28)</sup> 그리고 가입권의 행사로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당연히 가입권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권자가 가입권 행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시점에 보험계약자와 가입권자가 조정하여야 한다.<sup>29)</sup>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압류절차 또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갱생절차를 통해 계약해제를 통지한 상황에서 가입권자가 요건을 갖추어 가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해당 해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일본보험법 제60조 제3항).

이에 따라 압류절차의 경우 가입권자가 지급한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어 압류절차가 종료된다(일본민사집행법 제155조 제2항). 이때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합계액에 비해 부족하였어도 해당 압류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한편, 파산절차의 경우 파산관재인에 의해 가입권자가 지급한 해약반환금 등의 상당액이 파산재단에 편입하게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보험계약은 자유재산이 된다. 이러한 법리는 회생절차나 갱생절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30)</sup>

### Ⅲ. 우리나라에의 보험수익자 가입권제도의 도입가능성

#### 1. 보험수익자 가입권제도 인정의 필요성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비롯한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양도나(상법 제731조 제2항<sup>31)</sup> 채권담

28) 李鳴, 앞의 논문, 266頁.

29) 岡田豊基, 앞의 책, 369頁.

30) 위의 책, 369쪽; 山下友信, 「保險法」(第3版補訂版), 앞의 책, 326頁; 潘阿憲, 앞의 책, 295頁; 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앞의 책, 178頁; 遠山優治, “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介入権)について”, 앞의 논문, 178頁.

31)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4, 453쪽; 정동윤(대표집필), 「주식상법[보험(I)]」(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467쪽;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제9판), 박영사, 2015, 405-406쪽; 정동윤, 「상법(하)」(제4판), 법문사, 2011, 709쪽;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9판), 박영사, 2017, 831쪽; 최기원, 「상법학신론(하)」(제15판), 박영사, 2008, 796-797쪽.

보로의 활용을 인정하고 있다.<sup>32)</sup> 이러한 보험계약상의 권리 중 보험금청구권이 가장 재산적 가치가 높은 권리라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보험수익자이다. 따라서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하므로, 그의 지위와 그가 가지는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 유족의 생활보장을 주된 기능으로 함에 따라,<sup>33)</sup> 보험계약관계자의 친족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를 통해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중 일부금액<sup>34)</sup>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무상주의에 의한 보호제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는 보험수익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실사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18대 국회(2008년 1월 및 8월)에 제출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065호 및 의안번호 1800550)에서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32) 정진욱, “재산적 권리로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390쪽.

33) 양승규, 앞의 책, 445쪽; 정동윤, 앞의 책, 703쪽; 정찬형, 앞의 책, 824쪽; 홍진희/김판기,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의 취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한국소비자원, 2011, 187-188쪽.

3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를 통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계약상 권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및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전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및 전자의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자 하는 상법 제734조의2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① 사법상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해 사회보장적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②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압류금지채권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 ③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만을 금지하여 파산의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④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행사 시 그 실효성이 낮다는 점, ⑤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힘든 무상주의에 의한 보험수익자 보호방안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sup>35)</sup>

이에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이루어 질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한 압류나 파산절차 등과 같은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가지는 권리 또한 보호이익이 존재하므로, 보험수익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권리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미 우리 법제 하에서는 무상주의에 의한 압류금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험수익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수익자가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상주의에 의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제한을 가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보호하는 사후적 보호방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애초에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사전적 보호방안인 압류금지제도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인정을 위한 검토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5) 김선정, 앞의 논문, 106-112쪽 참고.

## 2. 일본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우리나라에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데 있어 이미 보험법에서 명문으로 보험수익자 개입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일본 보험법상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에 관한 규정마련을 위한 기준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 (1) 일본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특징

#### 1) 개입권에 관한 규정 및 적용대상 관련 특징

일본보험법에서는 개입권에 관한 규정을 생명보험계약과 상해질병정액보험계약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3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sup>36)</sup> 이들 규정에서는 보험계약의 해제권자, 계약해제효력의 발생시기,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개입권자의 요건, 개입권의 행사방법·행사기간·행사효과,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보험법에서는 제60조 제1항에서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계약으로 보험료적립금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개입권제도가 적용되며, 생존보험계약이나 보험료적립금이 없는 보험계약에는 개입권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sup>37)</sup>

#### 2) 개입권자의 요건 관련 특징

일본보험법은 개입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보험수익자일 것, ② 보험계약자가 아닐 것,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피보험자 자신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일본보험법 제60조 제2항). 개입권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 중 일부만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sup>38)</sup> 한편,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

36) 최병규, “독일의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 입법방향에 대한 연구”,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399쪽.

37)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616-618頁; 潘阿憲, 앞의 책, 290-291頁; 萩本修編著, 앞의 책, 202頁.

해서는 일본보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론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통설에 따르면 해당 보험계약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sup>39)</sup> 보험계약자는 일본보험법상 가입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발생한다.<sup>40)</sup>

### 3) 가입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관련 특징

일본보험법의 경우 가입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았을 때로 본다. 즉, 가입권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제통지의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입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이 진행된다. 일본보험법이 가입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가입권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가입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 압류채권자나 파산관재인 등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지위는 강화되고 가입권자의 지위는 약화될 수 있다. 다만, 일본보험법 하에서는 계약해제의 효력발생일까지 가입권자에 의해 가입권이 행사되는 한 가입권이 우선한다.<sup>41)</sup>

### 4) 가입권의 효과 관련 특징

일본보험법에 있어서는 가입권을 행사한 자가 법률상 당연히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권의 행사를 위하여 가입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을 당시 보험계약자와 가입권자가 조정하여야 한다.<sup>42)</sup> 따라서 일본보험법 하에서는 가입권 행사 후 가입권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 받지 않은 경우, 동일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나 다른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해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입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또 다시 가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더불어 가입권 행사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38) 山下友信, 「保險法」(第3版補訂版), 앞의 책, 325頁.

39) 위의 책, 276頁; 大森忠夫, 「保險法」(補訂版), 有斐閣, 1991, 273頁.

40) 李鳴, 앞의 논문, 268頁.

41) 위의 논문, 268-269頁.

42) 岡田豊基, 앞의 책, 369頁.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의 존재는 개입권자가 보험계약을 존속시킨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실효성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sup>43)</sup>

## (2) 시사점

우리나라에 보험수익자 개입권 제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특징을 잘 고려하여, 도입이 필요한 부분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입권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를 한정하여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본보험법과 마찬가지로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본보험법은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더해 개입권자의 범위 또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더해 개입권자의 범위 또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보험법은 개입권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개입권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행한 제한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지위는 강화되는 반면, 개입권자의 지위는 지나치게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본보험법은 개입권 행사 후 개입권자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지위승계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입권자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3.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 인정 시 검토사항

### (1)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설정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① 모든 보험계약

43) 李鳴, 앞의 논문, 269頁.

을 개입권의 인정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② 일정한 보험계약을 개입권의 인정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가 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보험수익자의 보험계약에 대한 개입 및 계약당사자의 지위변경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개입권을 인정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보험계약에만 개입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은 다시 ① 인보험계약만 인정하는 방안, ② 사망보험계약 및 그와 유사한 인보험계약만 인정하는 방안, ③ 생명보험 중 사망보험계약만 인정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가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존속시키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명보험 중 사망보험계약만을 개입권의 인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sup>44)</sup>

이와 같이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가 보험계약상 매우 이례적인 제도이자, 보험계약의 주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개입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는 생명보험 중 사망보험계약에 한정하고, 이후 해당 제도의 활용정도를 살펴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sup>45)</sup> 이처럼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개입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는 개입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반드시 일본보험법과 같이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개입권자의 범위설정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입권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① 일반적 보험수익자를 모두 개입권자로 인정하는 방안과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본인만 개입권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44) 전우현,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345쪽.

45) 위의 논문, 345쪽.

있다. 이에 대해 개입권은 사회정책적 목적달성에 국한되는 제한적 범위설정이 요구됨으로 개입권자의 범위 역시 친족 등 부양이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sup>46)</sup>

그러나 개입권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에 더해 개입권자의 범위마저 제한한다면 개입권의 행사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개입권자는 개입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입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를 개입권자로 인정하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개입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성명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사실혼관계자도 개입권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보험수익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명칭, 예를 들어, 법정상속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경우라면 그를 개입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률혼배우자만 개입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실혼관계자에 대해서는 관계형성의 사실관계, 사실혼관계유지기간 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입권자의 범위는 개입권의 행사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개입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3) 개입권의 행사요건

개입권자가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개입권 행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을 것, ② 개입권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 ③ 개입권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개입권 행사사실을 통지할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46) 위의 논문, 346쪽.

먼저, 개입권 행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동의는 개입권자가 개입권을 행사하기 전에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입권자가 개입권을 행사한 후 보험계약자가 이를 추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개입권자가 개입권의 행사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또는 보험계약자의 파산이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시점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개입권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개입권 행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은 개입권자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개입권자는 개입권의 행사기간 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개입권 행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개입권의 행사시기 및 기간

개입권자가 개입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일본보험법과 마찬가지로 1개월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개입권의 행사시기 즉, 개입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① 개입권자가 해지환급금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이 실행된 것이나 보험계약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것을 알았을 때로 보는 방안과 ②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제한이 행해진 때로 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 두 방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입권 행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상 권리제한에 대한 개입권자의 인식이 필요한가의 여부이다.

개입권의 기산점은 개입권자가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한 제한이 행해진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개입권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개입권의 행사기간을 정하는 경우, 개입권의 행사기간이 길어져 보험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sup>47)</sup>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일본보험실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47) 李鳴, 앞의 논문, 268頁.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제한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보험자가 해당 사실을 안 후 개입권자에게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개입권 행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sup>48)</sup> 그리고 설사 개입권의 행사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은 보험계약자의 다른 책임재산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개입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개입권자가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제한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개입권 행사기간 및 기산점과 관련된 내용 또한 개입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5) 개입권의 효과

개입권의 행사를 통해 개입권자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행한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제한을 배제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개입권 행사 후 기존의 보험계약자가 해당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험수익자에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보험수익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자신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또 다시 제한을 가하여 개입권자가 다시금 개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개입권 행사 후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개입권자의 보험수익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은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실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일본의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에서 가장 문제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개입권자가 개입권을 행사한 후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개입해 그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반복적 제한이나 보험계약자에 의한 일방적인 개입권자의 보험수익자 지위상실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48) 위의 논문, 265-266頁 참고.

## (6) 기타 검토사항

### 1) 보험수익자가 개입권 행사기간 중 변경된 경우

개입권자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1개월간의 기간 중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보험수익자를 개입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은 ① 개입권의 행사기간 중 기존 보험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인해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와 ② 개입권의 행사기간 중 기존 보험수익자가 생존해 있었으나 보험수익자가 변경된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개입권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9)</sup>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견해가 나뉜다. 먼저, 긍정설은 ① 개입권제도의 취지는 보험수익자를 보호하여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생활보장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점, ② 변경된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개입권의 행사를 인정하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은 조기에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개입권 행사기간 중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개입권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sup>50)</sup>

한편, 부정설은 ① 개입권제도의 취지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주요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을 존속시켜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보험수익자의 변경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 ② 보험수익자의 변경절차가 개입권의 행사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개입권의 행사기회 자체를 잃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개입권 행사기간 중 변경된 보험수익자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sup>51)</sup>

이와 관련하여 ① 개입권제도는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되는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② 개입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개입권자의 범위까지 지나치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 ③ 개입권의 행사는 개입권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개입권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채권

49) 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627頁 참고.

50) 高山崇彦, “保險金受取人の介入權”, 『保險法の論点と展望』, 商事法務, 2009, 302-303頁.

51) 山下友信/米山高生, 앞의 책, 624頁; 遠山優治, “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介入權について”, 앞의 논문, 175頁 이하 참고.

자 등의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개입권 행사기간 중 변경된 보험수익자도 개입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개입권자가 복수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이 아닌 ‘법정상속인’ 등과 같은 신분을 지칭하는 용어로 지정된 경우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친족이 개입권자가 되는 경우 개입권자는 수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 ① 수인의 개입권자가 개입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 ② 수인의 개입권자 중 일부만 개입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수인의 개입권자는 모두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입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개입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개입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인의 개입권자를 대표할 개입권자를 정하여 그로 하여금 개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sup>52)</sup> 다음으로 수인의 개입권자 중 일부의 개입권자만 개입권을 행사하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 개입권 행사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개입권을 행사한 자들은 개입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개입권 행사를 위해 지급한 금액 중 보험금 수취비용에 따른 분담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sup>53)</sup>

## 4.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과의 비교

우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제도와

52) 岡野谷知廣, “保險契約者の破産と介入權”, 앞의 논문, 235頁.

53) 遠山優治, “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介入權)について”, 앞의 논문, 187-188頁.

본 논문에서 도입을 제안하고 있는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를 비교해보고,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필요성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1) 의의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8조<sup>54)</sup>에서는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와 유사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이하 이를 ‘특별부활제도’라 칭한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자가 채권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험자에 대해 지급하고,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 (2)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와외의 비교

#### 1) 공통점

특별부활제도와 개입권제도는 ①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해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 ② 보험수익자가 해당 제도의 권리자가 된다는 점, ③ 해당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④ 권리의 행사기간은 보험수익자가 해당 권리의 존재사실을 인식하여야 기산된다는 점, ⑤ 권리 행사 후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대신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54) 생명보험 표준약관(2018. 7. 10.)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2) 차이점

특별부활제도와 개입권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특별부활 제도는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극세 및 지방세 체납처 분절차가 행해짐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인 반면, 개입권 제도는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제한에 더해 보험계약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 시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특별부활제도의 행사권자는 보험수익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임에 따라 보험수익자에 한정되는 반면, 개입 권제도의 행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이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해당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어 행사권자가 반드시 보험수익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부활제도의 행사기간은 보험수익자가 해당 권리의 존재사실을 통 지받은 날로부터 15일인 반면, 개입권제도의 행사기간은 행사권자가 보험계약상 권리에 제한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부활제도는 보험자가 해당 권리의 존재사실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통지 하여야 하는 반면, 개입권제도는 행사권자가 해당 권리의 행사사실을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3) 소결

상법상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다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특별부활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에 의한 해지 환급금청구권의 제한으로부터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부활제도는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와 법정상속인만이 해당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는 점, 권리의 행사기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점 등에서 보험수익자를 온전히 보호하기에 다소 부족한 면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개입권제도에 의할 경우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제한에 더해 보험계약 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보험수익자에 더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특별부활제도와는 별도로

상법상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특별 부활을 청약하면 보험자는 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승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특별부활제도가 표면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부활’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수익자 개입권과 같은 형성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진다. 이에 보험수익자의 보호에 있어 보험계약의 부활이라는 형식을 차용하기 보다는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또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타인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개입권자가 개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의 행사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동의에 더해 보험계약자 변경에 대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도 갖출 필요가 있다.

## 5. 입법적 개선방안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자면 이는 다음과 같다.

현행상법	개정제안
(신설)	제734조의2(보험수익자의 개입권) ① 해지환급금청구권에 대해 압류가 실행되거나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자하는 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현행상법	개정제안
	할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사실을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로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IV. 결 론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보장적 기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보험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실질적 귀속권자인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와 더불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후 유족의 생활안정을 주요 기능으로 함에 따라 보험계약관계자의 친족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제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대표적인 제도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가 존재한다. 보험수익자 개입권 제도는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과 같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지위보호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권리보호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에 따라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 일본은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와 관련하여 일본보험법 제 60조, 제61조, 제63조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본 입법례의 분석을 통해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어떠한 내용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보험수익자 개입권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의 개입

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에 따라 개입권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듯 개입권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범위를 제한한다면 개입권자의 범위까지 지나치게 제한하기 보다는 지정된 보험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자녀도 개입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입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제한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입권 행사기간의 지연에 관한 문제는 보험자가 개입권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제한사실 및 개입권 행사가능사실을 통지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이 반복적인 제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입권자가 개입권 행사 후 법률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면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이 제도를 통해 보험수익자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음에 따라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 등간의 원활한 이해조정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보험수익자 개입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개입권자에 대한 보험자의 통지제도와 같은 관련 제도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지원, 2004.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제9판), 박영사, 2015.
- 정동윤(대표집필), 「주석상법[보험( I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정동윤, 「상법(하)」(제4판), 법문사, 2011.
-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9판), 박영사, 2017.
- 최기원, 「상법학신론(하)」(제15판), 박영사, 2008.
- 김선정,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81집, 한국보험학회, 2008.
- 홍진희/김판기,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의 취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한국소비자원, 2011.
- 전우현, “보험수익자의 개입권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 정진욱, “재산적 권리로서 생명보험계약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 최병규, “독일의 생명보험 개입권 제도와 입법방향에 대한 연구”,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2. 국외문헌

- 大森忠夫, 「保險法」(補訂版), 有斐閣, 1991.
- 大串淳子/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解説保險法」, 弘文堂, 2009.
- 甘利公人/福田弥夫, 「ポイントレクチャー保險法」, 有斐閣, 2011.
- 山下友信/米山高生, 「保險法解説 (生命保險·傷害疾病正額保險)」, 有斐閣, 2010.
- 萩本修編著, 「一問一答保險法」, 商事法務, 2010.
- 山下友信, 「保險法」(第3版補訂版), 有斐閣, 2015.

岡田豊基, 「現代保険法」(第2版), 中央経済社, 2017.

潘阿憲, 「保険法概説」(第2版), 中央経済社, 2018.

遠山優治, “いわゆる 「保険金受取人の介入権」導入にあたっての問題点”, 「生命保険論集」第156号,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2006.

遠山優治, “契約当事者以外の者による解除の効力等(介入権)について”, 「生命保険論集」第165号,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2008.

岡野谷知廣, “保険契約者の破産と介入権”, 「(新しい) 保険法の理論と實務」, 2008.

高山崇彦, “保険金受取人の介入権”, 「保険法の論点と展望」, 商事法務, 2009.

工藤香織, “介入権制度の實務運用について - 保険商品ごとの特性に着目して -”, 「生命保険論集」第173号,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2010.

李鳴, “第三者のためにする生命保険契約本質論”, 慶應義塾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Abstract>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Intervention Rights of Beneficiary System**

**- Focus on Japan's Intervention Rights of Beneficiary  
System -**

**Seo, Go Eun · Ko, Eun Hee**

The position of the beneficiary, who is the inevitable existence of life insurance for others and who has right to claim insurance, needs to be protected. In addition, it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relatives of policyholders or the insured often become the beneficiary of life insurance for others as life insurance for others's main function is protection of the survivor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variability of the beneficiary's status, except for the exercise of the policyholder's right to designate and change the beneficiary. In particular, a system is required to protect the beneficiary from unforeseeable actions, such as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policyholder's creditors or others for rights of insurance policy.

As a result,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is drawing attention as an beneficiary protection system.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means a system in which the beneficiary can pay the policyholder's creditors or others a certain price and become a party to an insurance contract to protect their rights if the restriction on rights of insurance policy is made by the policyholder's creditors or others. The system can protect not only the position of the beneficiary but also the rights of the policyholder's creditors and others, thus seeking harmony of the two parties' interests.

The benefit of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is that it can effectively protect the beneficiary's status without requiring unilateral sacrifices, such as the policyholder's creditors. Therefore, I believe that it is worth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as an beneficiary protection

system. This system is typically implemented in Germany and Japan. Among the two,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system based on Japan's right of intervention of the beneficiary and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gainst it.

**Key Words** : beneficiary, right of intervention, claim of insurance, refund of termination, creditor of policyholder, bankruptcy official, foreclosure, bankruptcy, change of policyholder, notification to insurer